

대구광역시 달서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3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 달서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발의일자: 2023. 9. 1.(금)
- 회부일자: 2023. 9. 1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9. 13.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
-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규모 (면적, m ²)	시설현황	비고
달서구 가족센터	대구 달서구 아외음악당로13길 60(성당동)	연 면 적 : 1,105.37 부 지 면 적 : 668.8	지하1층: 공동육아나눔터, 문서고 1층: 사무실, 집단상담실 2층: 교육장, 상담실, 언어치료실 3층: 강당	종사자 36명

※ 연간운영보조금: 687,240천원(기금:시비:구비, 5:2.5:2.5)

※ 현 수탁기관: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(2021. 1. 1.~2023. 12. 31.)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내용

- 달서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서비스 운영
- 건강가정지원, 다문화가족지원, 아이돌봄지원,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

○ 위탁기간: 5년(2024. 1. 1.~2028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

4. 관련근거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」 제10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3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동의안은 달서구가족센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통합서비스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서구가족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
- 달서구가족센터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」 제10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- 달서구 내 외국인 주민은 10,867명으로 대구시 31,689명의 34.3%를 차지하고, 한부모가족 2,307가구, 다문화가구 2,844가구(결혼이주자 2,557명, 자녀 2,202명)로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으므로 전문성과

지역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(성당동)에 위치하고 있는 달서구가족센터는 연면적 1,105㎡,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종사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이원화되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8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
- 취약·위기 가족지원,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, 상담 및 통·번역,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·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2022년 7개 사업분류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4,630건에 214,265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.
- 이에 따라 달서구가족센터 위탁근거는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가 있고,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